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 김지인 소유물건(2024타경103761)

의뢰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배철형

감정서번호 : ch2501-1-109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창조감정평가사사무소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김 수 진

(인)

감정평가액	일억일천오백만원정(₩115,000,000.-)					
의 퇴 인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배철형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제 출 처	수원지방법원 경매5계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김지인 (2024타경103761)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01.20	2025.01.17 ~2025.01.20	2025.01.20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 액
	아파트	1세대	아파트	1세대		115,000,000
	합 계					₩115,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 대상물건 개요

###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하며 “용인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수원지방법원의 경매목적에 의한 감정평가 건임

### 2.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67-8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학산로4(역북동)				
건물명	동산2차아파트		용도	아파트	
구분	동 / 층호수	전유면적(m <sup>2</sup> )	공용면적(m <sup>2</sup> )	대지권(m <sup>2</sup> )	사용승인일자
기호1	402호	58.50	21.63	44.58	1988.11.2

※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공용부분(주,부)의 합산면적임.

### 3. 기준시점 등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5년 1월 20일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1. 기준가치(시장가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감정평가의 근거

본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실무기준」 등 관례법령과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음.

### 3. 감정평가조건 및 감정평가방법

#### 1) 감정평가방법의 관련 규정

관련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제7조	대상물건별로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괄, 구분 또는 부분 감정평가 가능함.
11조	감정평가는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법),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에 따라 평가함.
12조	대상물건별로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시산가액 조정을 통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14조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15조	건물의 감정평가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2) 세부감정평가방법

평가방법	세부내용
공시지가기준법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3) 감정평가조건

해당사항 없음.

### 4)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한 후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구분소유부동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건물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통상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명령에 의거 토지 건물배분가액을 명세표 상에 기재하였으며 배분 비율은 지역적 특성 및 대상부동산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4. 그 밖의 사항

지번, 면적, 동수 및 호수 등의 목록표시근거는 귀 제시목록을 기준으로 하였음.

본건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내부구조도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평가전례, 외부관찰, 탐문조사등을 통하여 표준적인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내부구조를 도시하였는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참여시 반드시 재확인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거래사례비교법)

### 2. 거래사례의 선정

인근 지역내 거래사례로 대상물건과 물적 유사성이 높고,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사례#1>를 선정함

사례	소재지	건물명	층/호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금액(원)	자료 출처	거래시점	사용승인 일자
#1	역북동 467-25	동산7차 아파트	2층	84.69	2,036,840	172,500,000	등기부 등본	24.2.1	1990.11.18
#2	역북동 467-25	동산7차 아파트	2층	84.69	2,184,437	185,000,000	한국부동산원	24.11.9	1990.11.18

[※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자료, 등기부등본]

### 3.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4. 시점수정

□ 한국부동산원 주거용 매매가격지수

-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요지역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를 활용하여 산정함
- 시점 수정치 산출

내용	가격지수	시점
사례1의 매매 당시 가격지수	103.4	24.2.1
본건 가격시점 당시 가격지수	102.9	25.1.20
시점수정치 결정	0.99516	시점수정치

(전월 매매지수 적용함. 전월지수 미발표시 전전월지수 적용함)

### 5. 가치형성요인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 등의 배치,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 단지 내 통로구조
호별요인	층별 효용,향별 효용,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평면방식(베이),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2)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구분	격차율	비고
	기호1	
단지 외부요인	1.00	대체로 유사함.
단지 내부요인	0.98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등 내부요인 열세함.
호별요인	0.99	전유면적의 차이 등 호별요인 열세함.
기타요인	1.00	대체로 유사함.
누계	0.970	

## 6. 인근 유사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 (1)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평가(거래) 금액(원)	평가목적/ 실거래여부	거래시점 (가격시점)	비고
#1	역북동 470-38	신광빌라	4	37.08	2,346,278	87,000,000	실거래가	24.8.28	
#2	본건	-	4	58.5	1,846,154	108,000,000	실거래가	22.2.12	
#3	역북동 467-8	동산2차	2	59.58	1,846,257	110,000,000	실거래가	21.8.12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부동산원)

### (2) 경매통계

(자료출처: 대법원 경매정보)

지역/용도	낙찰가율(%)	비고
용인시/전체	약 73.6	최근 1년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7. 비준가격

구분	거래사례 (원/㎡)	사정 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	산출가격	비준가격
기호1	2,036,840	1.00	0.99516	0.97	58.5	115,021,076	115,000,000

###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 참고가격자료(인근지역 매매사례 및 평가전례 등)에 의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비준가격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구분	감정평가액	비고
기호1	115,0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67-8 동산2차아파트 402호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건물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동산2차아파트	표시 467-8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1층-3층(각)	320.4	320.4	115,000,000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학산로4 (역북동)	
					4층	252.90	252.9			
					지층	309.96	309.96			
					합계					
	1.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가. 위 지상	467-8	대	2종일반주거지역	(내)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402호 철근콘크리트조		58.5			58.5
						1.소유권	44.58			
						-----	847x-----			44.58
						대지권	847			
<b>합 계</b>								<b>₩115,000,000.-</b>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용인 에버라인 "김량장역"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중 4층 4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자:1988.11.2)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급배수위생설비, 개별난방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지내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었으며,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내외, 동측으로 약 5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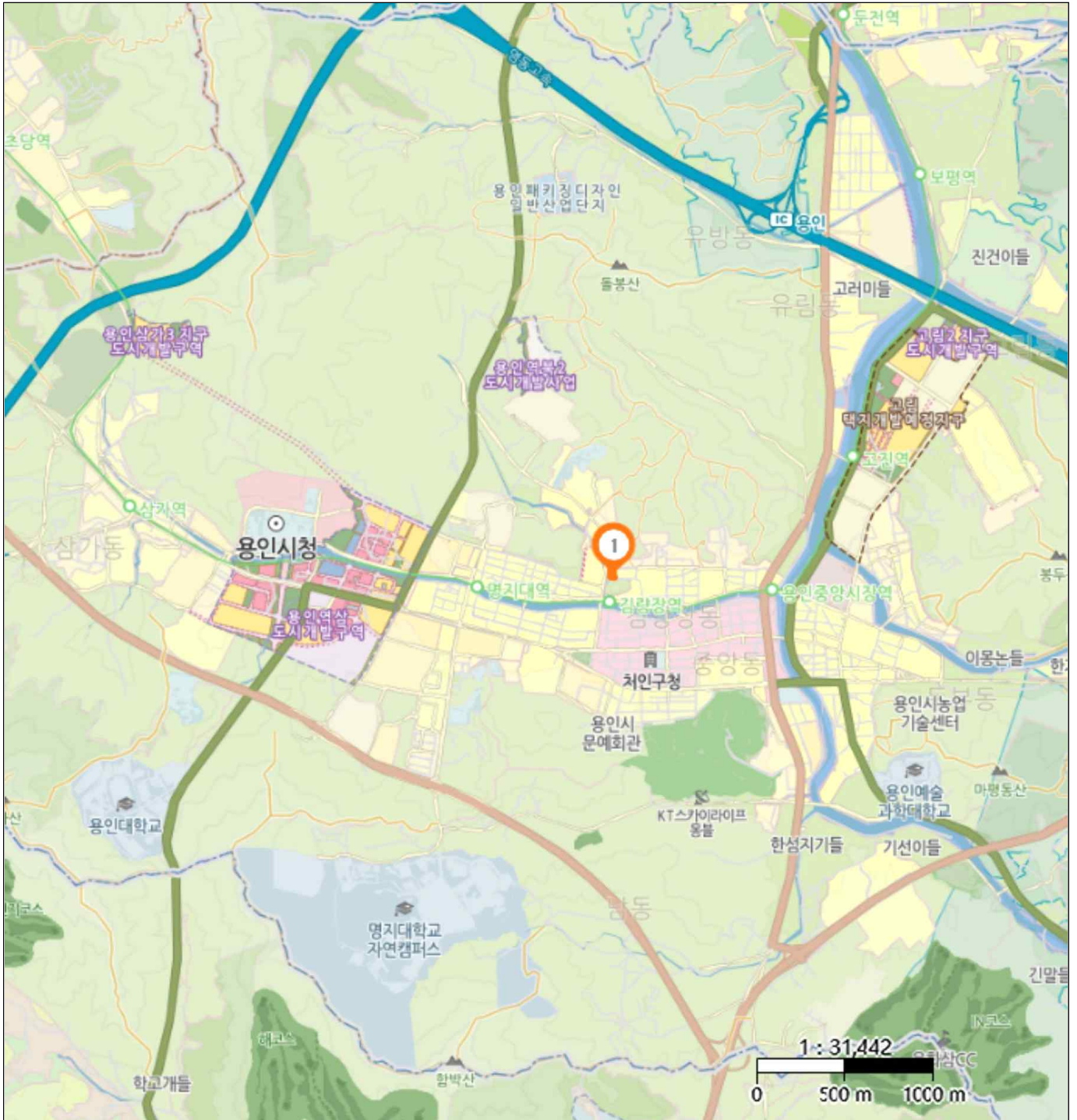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광역위치도



<b>소재지</b>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67-8 동산2차아파트 4층 402호
------------	---------------------------------------



#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67-8 동산2차아파트 4층 402호
-------	---------------------------------------



# 내 부 구조 도

<b>소재지</b>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67-8 동산2차아파트 4층 402호
------------	---------------------------------------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본건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내부구조도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평가전례 및 탐문조사, 외부관찰 등을 통해 표준적인 이용상황 등을 도시하였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확인하시고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진 용 지



동산2차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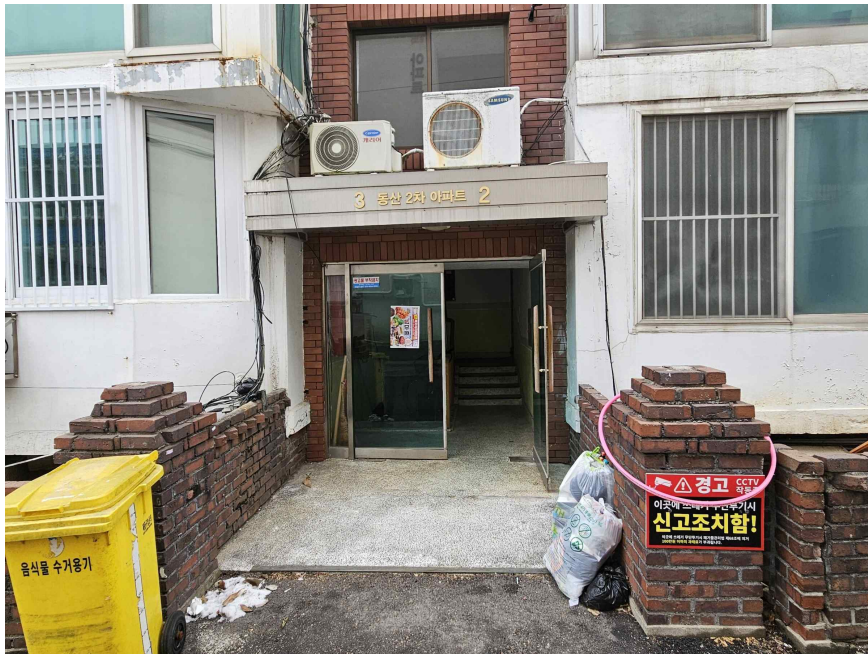


동산2차아파트

# 사 진 용 지



본건



공동출입구

# 사 진 용 지



세대현관



본건